
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위한
2021년 중점 추진과제

2021. 2.



금융위원회



목 차



- I.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를 통한
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1

- II.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4

- III.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9

I.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

◆ 최고금리 인하*에 따른 서민의 금리부담을 한층 경감하면서,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

* 24→20%,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 후 7월초 시행 예정

➔ 관계기관 공동 「최고금리 인하 준비 TF*」를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방안 논의 중 → 상반기 중 세부방안 발표 예정

* 금융위·금감원·민간연구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('20.12월~)

1

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

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햇살론17 상품 개편('21.下)

○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“이자부담 경감효과”와 “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축효과*” 양측면을 모두 고려하여, 햇살론17 금리 인하폭을 검토

* (예)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공급이 집중되어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

○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확대*

* 3년/5년 만기대출 성실 상환시

(현행) 매년 $\Delta 2.5\%p(17.9 \rightarrow 15.4 \rightarrow 12.9\%) / \Delta 1\%p(17.9 \rightarrow 16.9 \rightarrow 15.9 \rightarrow 14.9 \rightarrow 13.9\%)$ 인하
(개선) 금리인하폭 확대(예: $+\Delta 0.5\%p$)

② 20%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 검토('21.下)

○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 이용 차주*의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

* 20% 초과대출 차주 239.2만명(16.2조원), 평균 이용금리 24% 수준('20.3월 기준)

<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 예시 >

-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%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, 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·저신용자에게 최대 2,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

③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 구축(‘21.上)

-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*, 상시 출연제도 도입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안정화를 위한 「서민금융법」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

* (현행) 저축·상호금융업권 → (확대) 은행·보험·여전업권 추가

- 금융권별 상시 출연제도를 설계·시행*하고, 출연금 관리시스템 구축

* 「서민금융법」 개정시 시행령에서 공통·차등출연요율, 출연제외 대상 등을 규정

④ 민간 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규 개발·공급(‘21.下)

-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에서 벗어나, 개별 금융업권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다양한 상품 공급 추진

- * ① 금융회사에서 서민층 수요에 맞는 “보증부 신규 서민금융상품” 개발·제시
②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보증 공급
③ 주기적으로 지원 실적,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갱신 여부 결정

2

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저신용자 대출 유도

①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원가 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지원(‘21.下)

-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의 모집·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유도

* (예) ① 중개모집수수료 인하 ②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 조달, 영업 규제,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(소위 ‘대부업 프리미어리그’) 등

- 중금리대출 기준 하향 조정 및 취급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* 부여 등을 통해 저축은행·여전사 등의 저신용자 대출수요 흡수 유도

* (예) 사업자 중금리대출(20.11월 출시)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우대 등

②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

※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('18)에 따라 기존계약도 시행 시점부터 최고금리 20%가 적용되며, 타 업권에도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

3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

①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, 범정부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집중 홍보

- 검·경·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·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·처리
- 전용유튜브채널 「불법사금융 그만!」을 통해 신종수법·구제방법을 안내하고, 대중교통·라디오·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

② 불법사금융 근절·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*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조속히 국회통과되도록 노력('21.上)

*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6% 초과이자 무효화(반환청구대상) 및 처벌 강화

③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·자활지원 강화

- 피해자가 “한번에 간편하게” 피해상담, 금융지원 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 강화
- 불법추심 차단(채무자대리인) 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·강화*

* (제도 개요)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또는 ②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

II.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

- ◆ 청년·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,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

1 청년 등의 주거비·교육비 부담 완화

①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(40년) 정책모기지 시범 도입

- 청년·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여,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*

* (예시) 3억원 대출(대출이자 2.5%) 시 월 상환금액
(30년 만기) 119만원 → (40년 만기) 99만원으로 16.1% 감소함

- 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

② 청년 전·월세대출 지원 확대('21.上)

- 공급한도(총 4.1조원)를 폐지하여 청년층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공급하고, 1인당 이용가능한도 상향조정을 검토
- 보증료 추가 인하(0.05%→0.02%)로 청년층 부담경감

	현 행	개 선
공급한도	총 4.1조원 20년말 3.6조원 지원(한도 거의 소진)	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
1인당 한도	보증금 7천만원 월 50만원 이하	상향 검토
보증료	0.05%	0.02%로 인하

< 청년 전·월세 대출의 주요 성과 >

- (개요)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% 초반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, 월 50만원 이하 월세*를 지원하는 상품('19.5월~)
 - *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, 최대 8년간 거치(이자만 납부)한 후 분할상환 가능
- (금리) 시중대출 평균금리(2.66%) 보다 0.48%p 저렴한 2.18%
 - ☞ 전세대출은 이용자당 월 9만원 내외의 이자만을 납부함
- (지원규모) '19.5월~'20.12월까지 총 7.2만명에게 3.6조원 지원
 - ☞ 평균 전세대출액 5,040만원, 월세대출액 583만원
- (이용자) 소득이 없는 학생·취업준비생이 29.4%에 달함
 - ☞ 대출자체가 어려웠던 분들을 감안 시 주거문제 해결효과는 더 큼

③ '비과세 적금'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('21.上)

-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(SGI)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*하고,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 유도
 - * 보증대상 전세대출한도가 높은 만큼(SGI 5억원, 주금공 2억원) 분할상환 효과도 큼
-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취급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*
 - * 전세대출도 '주담대 구조개선' 대상 대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, 분할상환전세대출도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

< 분할상환 전세대출 개요 및 기대효과 >

- (개요) 전세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방식과 달리, 원금도 일부(예: 원금의 5%)를 갚아갈 수 있는 상품('20.11월~)
 - *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
- (기대효과) 저축이자는 과세되는 반면, 대출상환은 비과세 + 소득공제 요건 해당*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
 - * 원리금 750만원까지 원리금 납부액의 40%에 대하여 소득공제

④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('21.2월)

- 저소득·저신용층 가정의 초·중·고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'교육비 지원대출'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
- 장애인·한부모·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2β 수준으로 인하(연 4.5% → 연 3%)

	교육비 지원대출		취약계층 교육비대출	
	현행	개선	현행	개선
대상	초·중·고교 재학(입학)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, ①~③(택1) 해당자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(6등급 이하)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비자		▶ (기본요건) 교육비 지원대출 요건 충족자(좌동) ▶ (추가요건) 취약계층* 해당자 * 등록장애인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재난지역거주자 등	
한도	최대 5백만원		최대 5백만원	
범위	공교육비	공교육비 + 사교육비	공교육비 + 사교육비	
금리	연 4.5%		연 4.5%	연 3%

2 **고령화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 제공**

①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('21.上)

-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퇴직시기·자금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

* (증가형)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(물가상승에 대응 가능)
(감소형) 연금액을 더 받는 기간을 선택 가능(3,5,7,10년)

② 고령사회 '맞춤형 종합 자산관리' 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개선

- 금융당국·업계·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·운영하여 세부적인 신탁업(業) 규제 개편방안 마련('21.上)

< 신탁업 제도개선 방향 >

- ①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(금전·부동산 등)뿐만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(부채)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
- ②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
- ③ 유언대용신탁·치매신탁·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 확대

3 **취약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**

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('21.3월)

-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·폐업자의 경우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특례(최대 2년)에 대한 신청요건 완화(업력 1년 요건 비적용)*

* (현행) 업력 1년 이상 휴·폐업 자영업자
 (개선) '20.2월~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中 휴·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

② 사전채무조정(이자율 조정) 적용기준 개선('21.下)

- (이자율 인하수준) 당초 약정이자율의 50%(△50%)로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을 채무과중도,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
- (특례대상 확대) 현재 약정이자율의 35%(△65%)로 추가 인하 중인 취약계층 특례대상에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

구 분	현 행	개 선
이자율 인하수준	약정이자율의 50%(△50%)	채무과중도,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
취약계층 특례대상	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등	+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

◇ 대출全流程에 채권자와 개인채무자간 권리·의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(대부업법 전부개정)

* 현재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 중이며, 조속한 시일내 법안 국회제출 예정('20.上)

①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

-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
- 채무조정 요청 및 협상과정에서 개인채무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'채무조정교섭업자'를 선임하여 절차진행 가능

② 채무자의 연체·추심부담 경감
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(약정이자만 부과)

※ [가상사례] 대출원금(잔액) 100 =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+ 미도래원금 90
 (현재) 100 x (약정이자+연체가산이자) 부과 →
 (개선) [10 x (약정이자+연체가산이자)] + [90 x 약정이자] 부과

- 동일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,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* 도입

*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·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

③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

-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가 「소비자신용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
- 수탁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해당 수탁추심업자 뿐만 아니라 점검의무가 있는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(상당한 주의 인정시 면책)

Ⅲ.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

◆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(3.25일)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

① “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*” 운영

○ 금융권 준비상황 점검 및 법령해석 수요,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월 회의 개최(법 시행 전·후 3개월간 집중 운영)

* (구성) 금융위, 금감원, 소비자단체, 금융권 협회, 핀테크협회

- 분야별 실무전담반을 구성하여 제도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, 논의결과는 신속히 업계와 공유

* [주요 분야] ① 업자 등록 ② 내부통제 ③ 광고심의 ④ 영업행위 지침

② 새로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

○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『금소법 FAQ 게시판』(금감원 홈페이지)을 통해 수시 제공(2월~)

○ 금융권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임직원 및 소비자에 적극 홍보*

* (예) 설명회 개최, 금융권 임직원 교육,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, 금융교육 등

③ 제도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

○ (내부통제기준)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*의 ‘표준’을 제정·관리 하는 “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**”를 금융권 협회별로 설치(~3월)

- 개별업권이 주도하여 “표준내부통제기준”(best practice)을 마련·확산

* 금소법 제정으로 개별 금융회사 등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

**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독립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

- (판매제한·금지명령) 법령상 발동요건*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(민간 전문가, 소비자 대표 등 포함) 설치(3월)

- *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명령 가능
- 판매제한·금지명령제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·공표(3월)

④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감독 강화

-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, 이후 법 준수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* 추진

- * 경미한 위법행위는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,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

-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 전반에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방안 마련(3월)

-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보호 규제 적용범위, 입법방식 등을 확정